

#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사무소의 혁신과 인권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1.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거버넌스 책무

한국정부 수립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시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의 존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는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현재의 국가인권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태생 상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유엔최고대표실에서 발행한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에도 명시되었듯이 NGO와의 협력은 국가인권기구에 네 가지 효용성이 있다. 1)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는 역할, 2) 인권피해자들과 인권현장을 국가인권기구에 연결하는 역할, 3)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인권침해적 제도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나 정보를 국가인권기구에 제공하는 역할, 4) 공동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개발 등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가인권기구와 NGO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도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그 고유 기능인 국가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인권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1.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침해, 인권현안을 발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2. 국가인권위의 지역 인권 거버넌스 현실

국가인권위에서 1년에 1~2회 하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로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어렵다. 각 지역별, 주제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권위 혁신위도 “3.인권위는 연간 업무계획, 특별사업, 예산 등에 관한 논의, 업무 진행에 있어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직권조사·방문조사의 경우 지역시민사회와 적극적인 공조 방안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혁신위도 지적했듯이, 국가인권위는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무소 및 지역시민사회를 배제해 왔다. 각 지역인권사무소의 역할은 국가인권위 본부에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차원의 동력으로만 활용했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 동안 지역인권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초기 지역인권사무소의 인권행정이 인권교육 홍보가 중심이었으나, 현재 지역인권사무소는 조사·구제 기능, 인권정책, 인권교육홍보까지 지역인권사무소의 역할이 늘어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인권사무소의 인권행정이 지역에 밀착해 현장에 기반한 인권감수성 높은 인권행정을 펼쳤는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도 인권사무소의 인권행정이 관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역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역인권사무소가 국가인권위의 단순 보조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해서 인권정책과 인권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역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인권사무소는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호소통을 원활히 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

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역인권사무소가 해야 할 주요 임무인 것이다. 지역에 있는 법 집행 기관, 법률가 집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묶는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지역 인권의 보장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인권위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 3. 지역인권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사무소

그런 점에서 볼 때 각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인권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이 충분히 수행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어렵다. 여전히 지역인권사무소는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무소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와 권한 보장을 토대로 한 지역인권증진의 기대치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중장기적 지역인권사업을 입안하고 실행을 책임져야 할 지역인권사무소장의 역할과 책임도 불안정하다는 것이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대체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진정사건을 해결하려 할 때 정확한 사건에 대한 파악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의 인권증진정책을 위한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무소의 직원들의 배치나 사업을 확정할 때도 지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대전인권사무소의 경우 개소 4년여 동안 대전인권사무소장이 3번이

나 바뀌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지역인권사무소를 바라보는 국가인권위의 시각이 얼마나 본부 중심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제주의 경우 지역사무소가 아닌 출장소로 확정하면서 진정처리도 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인권사무소가 아닌 출장소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을 광주로 한다고 할 때 옥상옥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어떻게 일상적인 협력체계를 꾸릴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대구인권사무소의 경우 지역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식적인 간담회도 열리지 않아 지역인권시민사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도 지역인권사무소는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지역민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부응해야 하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특수성에 조응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인권사무소가 국가인권위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하위기관으로 머문다면, ‘지역의 인권화, 인권의 지역화’라는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은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인권사무소의 인권행정이 참여성과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그에 기반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지도 못할 것이다.

#### 4. 지역인권사무소의 혁신과 인권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이에 지역시민사회와의 지역인권사무소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가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평가해보아야 한다.

- 1) 지역인권사무소 조직 내규 및 지침에 대한 평가
- 2) 지역인권사무소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와의 사전 조율이나

의견 청취 과정 여부 평가

- 3)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구제 기능, 인권정책, 인권교육홍보에 대한 개괄적 평가
- 4) 지역인권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인권사무소의 활동 역할에 대한 평가
- 5) 지자체인권위원회와 3자의 테이블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와 대안 (협력체계 구축)
- 6) 위의 제기된 평가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가칭)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사무소 강화(혁신)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제안